



제433회 국회 (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 근거 마련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24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 근거 마련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7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부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평가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대상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초 평가 보고서에 ‘설로 인접 공사’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또, 일부 지방공기업은 사업 규모나 산재 위험이 일반적인 공공기업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에서 빠져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가 규정하는 정부의 책무 중 제4호의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서 “자율적인”을 삭제하면서, 해당 책무와 관련된 시책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중 같은 조 제1호의 “자율적인”을 삭제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 3. (생략) 4. 사업주의 <u>자율적인</u>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산업 안전</u> ----- -----

지원

5. ~ 9. (생략)

② (생략)

<신설>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
제 확립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경
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의 향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
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
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
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u>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u> ③ <u>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u> ④ <u>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기관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체제, 관리, 활동, 성과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하며, 기관별 안전경영활동 자료로 활용

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해당 평가(이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라 함)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로 명명하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의 실시 근거, 평가 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평가과정에서의 협조와 평가 결과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내용임.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¹⁾ 규정된 평가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함으로써, 평가 대상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의 정부 책무는 사업주가 법령상 부과된 의무 외에도 스스로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조항으로서 ‘자율적인’ 문구를 삭제할 경우 동 조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동 조항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공공기관에의 적용을 전제로 ‘자율’의 법문언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산안법령은 정부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법 제4조제1항 각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

1)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6호]

정하고 있는바(시행령 제3~7조) 시행령 제4조만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 개정의 실익도 적으므로 제4조 및 제8조의2제1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개정안 제8조의2제2항은 경영평가 대상·업종·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방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평가가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기관 특성에 맞는 지표개발, 평가인력 충원 및 예산편성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²⁾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

2)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수정의견)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